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21일, 이헌승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6.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11.) 상정, 축조심사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헌승의원)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봉사동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봉사동물은 곳곳에서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은퇴 후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센터 등을 통한 체계적인 보호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군견 등 봉사동물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봉사동물을 운용하는 각 기관에서는 사료 확보 등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봉사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재금)

개정안은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퇴역한 봉사동물의 사육·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현행법은 봉사동물을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현행법 시행령은 그 범위를 장애인 보조견,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국토교통부·경찰청·해양경찰청에서 수색·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소방청 119구조견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봉사동물은 약 1,360마리로, 이 중 훈련·활동 중인 동물이 약 1,060마리, 은퇴한 동물이 약 300마리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봉사동물은 고도의 훈련을 통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육 과정에서도 적절한 사육·관리가 필요하며, 은퇴한 봉사동물은 대부분 대형견으로 노령 또는 질병으로 인해 민간 입양 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봉사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소유자등의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퇴역 봉사동물의 사육

-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봉사동물이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봉사동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개정 취지에 동의하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방안 등 봉사동물의 보호·관리체계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유사 사례 검토 등을 거쳐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기획재정부는 안 제16조의2에 대하여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민간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은 민간 영역에서 자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16조의3에 대하여 은퇴한 봉사동물의 사회화 및 입양 등은 운용기관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봉사동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확대 필요성,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